



제2881호 2023. 1. 27.(금)

www.jeonbuk.go.kr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5호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고시 ..... 1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6호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 2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3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29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45호 제397회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안 공고 ..... 30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46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 52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49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53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53호 전라북도의회 제출안건 공고 ..... 54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63호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업자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55

**지시사항**

- 2023. 1. 20.(금) 간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항 ..... 56

**시 군**

- 군산시 고시 제2023-11호 도시계획시설(갯벌연구센터 및 대로1-4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58
- 익산시 고시 제2023-10호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60
- 정읍시 고시 제2023-1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61
- 김제시 고시 제2023-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외에밋들 징계장터 조성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63
- 김제시 고시 제2023-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 65
- 완주군 고시 제2023-10호 군계획시설(국립농업과학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 66
- 임실군 공고 제2023-72호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68

**기 타**

-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3-2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안내 공고 ..... 70

**발행 전라북도 (편집 대변인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고시 제2023-25호

##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고시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3년도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전라북도지사

- ① 2023년도 전라북도 공공기관장 연봉액 상한선 : 168,889천원  
[ 2023년도 최저임금의 7배 : 9,620원(최저임금) × 209시간(월) × 12개월 × 7배]
- ② 2023년도 전라북도 공공기관 기관장 외 임원 연봉액 상한선 : 144,762천원  
[ 2023년도 최저임금의 6배 : 9,620원(최저임금) × 209시간(월) × 12개월 × 6배]

전라북도 고시 제2023-26호

###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2023. 1. 27.  
전라북도지사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라 전라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가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관리·가스요금·공사비·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의무) ① 회사는 가스공급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하겠습니다.

②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회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계법규·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 보고·점검실시·기록보존·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③ 회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회사 내에 고객전담부서(고객봉사실)를 설치,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접수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④ 회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회사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허가한 공급권역내 가스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설치 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열량”이란 온도 섭씨 0도 및 압력 101.325kPa(10,332mmAq)의 상태에서 건조한 가스 1Nm<sup>3</sup>의 총열량을 말합니다.
- 2.“최저열량”이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저치를 말합니다.
- 3.“최고열량”이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고치를 말합니다.
- 4.“월간가중평균열량”이란 한국가스공사가 측정한 열량과 공급량을 월간으로

- 가중 평균하여 계산한 열량을 말합니다.
- 5.“기준열량”이란 천연가스열량제도 도입에 따라 변화하는 천연가스 열량에 상응한 계량기 등급 산정 및 표준소비량 환산에 적용되는 열량으로 열량변동을 감안하여 5년마다 재산정합니다.
  - 6.“압력”이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스를 정압기 출구·가스공급시설의 끝 부분의 배관 또는 연소기 입구에서 측정한 계기압력을 말합니다.
  - 7.“최고압력”이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고치를 말합니다.
  - 8.“최저압력”이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저치를 말합니다.
  - 9.“가스시설공사”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개조·보수·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 10.“가스사용자”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를 말합니다.
  - 11.“수요자”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개발사업자 등을 말합니다.
  - 12.“공급의 중지”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회사 직권에 의한 가스공급의 일시중단을 말합니다.
  - 13.“지역정압기”란 다수인의 가스사용자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 14.“전용정압기”란 단독사용자 또는 특정한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스사용자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 15.“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이란 각 연소기의 명판에 표시된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의 합계를 말합니다.
  - 16.“응급조치”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의 제한·중지 등의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 17.“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 18.“시설분담금”이란 가스사용자의 가스소비량 및 가스소비의 유형, 가스공급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구분됩니다.
    - 가.“일반 시설분담금”이란 공동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나.“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이란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 및 용도 변경 시점에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다.“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공급요청이 존재하여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19.“특수공사”란 배관을 매설할 지역이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포장상태, 기타 사유로 인해 압입, 하월, 교량 매달기 및 도로복구 관련 특수공사 등 특별한 공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 등에서 별도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 20.“특수계량기”란 원격계량기,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디지털계량기, 온압보정장치 내장형계량기 등 계량값의 보정, 전송 및 표시를 위하여 부가장치가 설치된 계량기를 말합니다.
- 21.“잠재수요세대”란 공급신청 지역내에 미신청 세대(심야전기, 폐가 제외)와 건축허가 및 건축물 공사 중인 토지에 포함된 세대를 말합니다.
- 22.“폐지”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입배관의 임의지점을 절단하고 CAP 등으로 용접, 용착 등 막음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 23.“해지”란 전출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입배관의 절단없이 가스공급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24.“동일장소”란 회사와 고객이 최초 계약체결시 가스사용신청을 신청한 건축물을 말합니다.(집합건물 등 층, 호별 분양건물은 개별장소로 봅니다.)
- 25.“듀얼연료설비”란 하나의 공정에서 도시가스 외에 다른 연료의 사용이 가능한 설비를 말합니다.
- 26.“연료대체”란 한국가스공사의 요청으로 듀얼연료설비에 도시가스를 대신하여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장 사용신청 및 계약

제5조(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1]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스사용 신청을 할 때에는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용시설의 고객(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금 및 그 밖의 채무에 대하여 고객

(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5조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객(소유자 제외) 명의로 신청합니다.

④ 매매 및 전·출입 등으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신·구 사용자는 변경내용 발생 후 14일 이내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① 가스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은 회사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의 시설분담금 납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합니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고시에 의하여 산정된 [별표2]의 시설분담금을 공급계약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가스공급 개시 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 동일장소에서 해지 후 다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공급 및 기타 사용시설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분담금 납부액을 인정하나 재신청시 표준가스소비량을 초과할 경우 가스소비량을 기준으로 시설분담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④ 가스사용자의 신청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입배관이 폐지된 경우 제5조에 따라 새로운 신청자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급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 할 때에는 가스 수급과 공급 안정성, 배관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하여 월 사용예정량이 10만<sup>m</sup>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량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⑥ 제4항은 월 평균 사용량이 10만<sup>m</sup> 이상인 기존 가스사용자의 경우에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제7조(승낙의 의무) ① 회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스공급 승낙 통지 시에는 사용계약 가능 시기 및 계약조건, 제14조제8항에 따른 상호간의 협의내용 등 필요사항을 함께 안내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1. 가스 수급의 불균형, 공급압력 저하 등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예정시기를 통지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2.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3.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4. 가스공급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 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지역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계획 중이거나 승인된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공익상 가스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사는 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8조(계약의 준수) ① 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스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제정수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가.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 나. 듀얼연료설비의 설치, 변경 또는 폐쇄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대·상속·사업자변경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회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4.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전 가스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5.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사항
- ② 제1항제1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연체료를 일할 계산하여 2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하며, 가산금을 부과하는 미납원금의 범위에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연체료 = 미납원금×(2/100)×(체납일수/납기일이 속한 달의 일수)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발생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 시점의 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위약금을 징수하며, 같은 행위로 인하여 가스안전사고 등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집니다.
1. 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으로 계량기 임의조작 및 파손, 무단교체 등 :  
계량기 교체비용 + 전년 동월사용량의 5배
  2. 봉인파손사용 : 전년 동월사용량의 3배

3.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사용 : 전년 동월사용량의 5배
4. 계량기 이전배관 불법 연결사용 : 전년 동월사용량의 5배
5. 계량기 무단이설 : 전년 동월사용량의 3배
6. 부정시공사용 : 전년 동월사용량의 5배
7. 미납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객명의로 변경 신청시 : 미납요금의 1배
8. 전년 동월사용량을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사용량을 월사용량으로 하여 적용하며, 전년 동월 및 최근 3개월 이내 평균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사용량의 산정은 가스연소기의 총 최대 가스소비량에 따라 산정합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듀얼연료설비를 보유한 사용자는 회사와 별도의 연료대체계약을 체결하고, 연료대체 시행 관련 다음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 듀얼설비의 설치 및 변경 또는 폐쇄시 사전 통지
2. 연료대체 제도 운영을 위한 필요자료 제출
3. 한국가스공사의 연료대체 요청에 따른 연료대체 시행 참여
4. 기타 시행 관련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연료대체 시행 지침에 따라 시행

제9조(계약)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예정일 3일 이전에 그 일자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폐지예정일에 폐지하고, 그 폐지일을 해약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회사가 그 폐지일 이후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접수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② 가스사용자가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가스사용을 중지 또는 배관을 철거한 경우에는 회사가 가스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행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③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가스공급을 중지한 후 6개월 이내에 가스사용자가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공급중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약일 10일전까지 고객에게 요금납부를 최고한 후 공급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⑤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요금 납부시에는 다시 가스를 공급합니다.

⑥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이 승계되지 않도록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매매한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신규 임차인이 사용할 경우 매매일과 임차일을 전 가스사용자의 해약일로 합니다.



제10조(계약소멸후의 관계) ① 계약기간중의 요금 및 그 밖의 채권 채무사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에도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9조에 따른 해약 후에도 회사 소유로 설치되어 있는 공급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설치 장소의 토지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그 장소에 계속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안전하게 폐쇄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제3장 공사 및 검사

제11조(공사시행)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회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 공급관 등) 및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공자는 도로굴착 제한여부와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 관로로부터의 분기점 및 분기일시 등 착공 전에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회사 직원 입회하에 분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타인 토지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승낙을 받은 후 필요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공급전안전점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회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확인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공급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② 공급전 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공급 전 안전점검이 끝난 도시가스 연료 전환시설에 대하여 열량변경작업 확인을 위하여 연소기 제조사가 가스공급을 요청할 경우 도시가스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열량변경작업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시에는 연소기 제조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3조(가스계량기) ①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인(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② 가스계량기는 수요자가 당해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압력 및 가스사용량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도록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검사·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40등급 초과 대용량 계량기의 최초 설치 시에는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야 합니다.

③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는 회사가 실시하고, 그 밖의 계량기 교체에 대해서는 별도 계상하여 가스요금 고지서에 합산·부과합니다.

④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합니다. 또한, 가스사용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정한 검정기관에 계량기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단, 검사결과 사용오차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⑤ 일반 계량기가 아닌 특수계량기를 설치시 회사는 일반 계량기 관리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가스사용자가 특수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 계량기 교체시 일반계량기에 비해 추가로 발생하는 차액 및 특수계량기를 사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설치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 처리합니다.

⑥ 가스계량기 및 압력온도 보정장치는 관련 법률 및 특례기준에 의거 승인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13조의2(온압보정장치)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용자가 선택하여 보정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스시설의 안전과 측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는 유지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14조(공사비) ①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급요청을 받은 경우 회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②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의 부담으로 하되, 수요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별표2]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④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수요자와 협의에 의하여 50%이하 범위내에서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⑤ 가스사용자 소유 토지 경계선내의 사용자 공급관, 입상관, 내관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스사용자의 토지안에 있는 가스공급시설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와 법에서 규정하는 전체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유지·관리·교체 및 가스누설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⑥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 ⑦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⑧ 수요자가 제6조제2항에 의한 [별표2] 시설분담금 외의 추가적인 공사비 부담을 전제로 가스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회사와 수요자와의 협의에 의거하여 도로와 병행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가 승인을 받습니다.
- ⑨ 지역난방 수급지역으로 취사용 가스만 공급하는 택지개발 또는 택지조성지구 내의 가스 공급시설은 회사와 택지개발 또는 택지조성지구 사업자가 협의하여 개발사업자가 시행합니다.

#### 제4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15조(검침) ① 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회사가 매월 또는 격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스사용자와 별도로 협의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 가스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자가 검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검침을 실시합니다.

1. 가스사용이 개시 또는 폐지되었을 때
2. 가스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때
3. 가스계량기의 교체 또는 등급을 변경할 때
4. 사용량의 현저한 변동이 있어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
5. 세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제16조(계량의 단위) 사용량의 계량단위는 세제곱미터(m<sup>3</sup>)로 하며 검침시 소수점 이하의 단위는 절사합니다.

제17조(사용량의 산정) ① 회사는 가스사용자가 사용한 기간의 제2항에 의한 사용량(m³)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지하는 월간가중평균열량(MJ/Nm³)을 곱하여 사용열량(MJ)을 산정합니다.

②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가스계량기 검침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포함 전후 1개월(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사용량 또는 월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통지합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사용량은 익월 검침시에 정산합니다.

⑤ 회사는 가스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한 경우에는 아래의 산정식으로 사용량을 산정합니다.

1. 속동의 경우  $V = \frac{(V_1 \times (100 - A))}{100}$

2. 지동의 경우  $V = \frac{(V_1 \times (100 + A))}{100}$

V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사용량(m³)

V<sub>1</sub> =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를 초과한 가스계량기의 검침량(m³)

A =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를 초과한 가스계량기의 속동을 또는 지동율(%)

⑥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은 아래의 산정식으로 계산 또는 별도의 압력, 온도 등 보정장치를 설치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은 매년 도지사가 고시하는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V = \frac{(V_1 \times (101,325 + P))}{101,325 + 980.7}$  V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사용량(m³)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Pa)

V<sub>1</sub> = 가스계량기의 검침량(m³)

$V = \frac{(V_1 \times (10,332 + P))}{10,332 + 100}$  V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사용량(m³)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mmAq)

V<sub>1</sub> = 가스계량기의 검침량(m³)

제17조의2(온압보정장치에 의한 사용량의 산정) ①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온압보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온압보정장치에서 산출된 보정값으로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②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없이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의 사용량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 제5장 요 금

제18조(요금) ① 가스요금은 수요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사용요금은 도지사가 승인한 [별표3]의 요금표를 적용합니다.

②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98.8.1 시행)에 따라 원료비 변동에 의한 도매요금 변동가격을 통보받은 경우 회사는 소비자 요금에 자동연동조정 시행합니다.

③ 원료비(도매요금)를 제외한 타 사유로 공급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④ 가스요금이 변동되는 경우 회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요금표와 요금변동 유무를 기재하여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⑤ 가스요금 조정시 별도의 검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 사용량을 요금조정 전후의 가격에 따라 사용일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제19조(가스요금 용도 구분) 가스요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취사·난방·중앙난방), 업무난방용, 일반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 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열전용설비용으로 분류하고 각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다만, 단일 계량기를 통해 복수의 용도로 공급되는 가스는 용도구분에 관한 특별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사용용도를 적용합니다.

1. 주택용 요금은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타용도의 요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업무난방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타 용도의 요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일반용 요금은 1호, 2호 및 4호 내지 7호, 8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요금은 동절기 1~3월, 12월. 하절기 6~9월. 그 밖의 월(4~5월, 10~11월)을 적용합니다.
4. 냉난방공조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서 냉난방공조기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9월)에는 냉방, 동절기, 그 밖의 월에는 난방용

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단, 냉방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9월) 냉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는 하절기에만 공조용 요금을 적용합니다.

5. 산업용 요금은 통계청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 공정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열병합발전에 사용되는 가스는 열전용설비용 또는 열병합용을 적용하고,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가스는 연료 전지용을 적용하며, 제조업체의 동일 장소내에 있는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라 함은 구내식당, 목욕탕, 의무시설, 매점, 이·미용실, 경비실, 사무실,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등의 시설을 말하며 사택은 부대시설로 보지 아니하며 산업용 요금은 동절기 1~3월, 12월. 하절기 6~9월. 그 밖의 월(4~5월, 10~11월)을 적용합니다.
6. 수송용 요금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7. 열병합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연료전지용에 해당하는 가스는 제외하며, 열병합용 요금은 동절기 1~3월, 12월. 하절기 6~9월. 그 밖의 월(4~5월, 10~11월)을 적용합니다.
  -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 다. 그 밖의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과 전기를 사용하는 자
8. 연료전지용 요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연료전지(고정형 연료전지에 한함)에서 직접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제20조(요금의 수납) ① 회사는 제17조제1항의 사용열량(MJ)에 따라 [별표3]의 요금표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을 납부 마감일 7일전까지 회사 소정의 납입고지서(전자납입고지서 포함)로 송달합니다.

② 가스사용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7일의 납부기간을 정한 별도의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거나 익월 납입고지서에 체납요금을 별도로 표기하고 익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③ 회사는 1인의 가스사용자가 2개 이상의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징수합니다. 다만, 주 계량기를 경유하여 설치된 2개 이상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용량을 검침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주택용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합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1. 제27조에 따라 월중 5일 이상 공급 또는 사용을 제한한 경우
2. 최초공급, 해약 또는 제28조에 따른 공급중지로 사용일수가 월중 15일에

## 미달하는 경우

- ⑥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 ⑦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요금납입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납입고지서를 재발급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⑧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출입 사항을 회사에 통지한 가스사용자는 가스계량기의 별도 검침을 통하여 가스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제21조(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① 요금은 매월 또는 각 고지분을 소정 납기내 까지 징수합니다. 다만, 공급중지, 폐지, 부도 또는 연2회 이상의 습관적으로 미납된 수요가는 월3회 분할 검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가스사용자가 부도 또는 기업 파산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인지일 전 사용요금에 대하여도 납기와 무관하게 즉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도지사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납기를 따로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④ 가스사용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은행이나 장소 등에 납부 기한내에 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22조(10원단위 미만처리) 요금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위를 절사합니다.

제23조(이의 신청) ①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스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내용을 결정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 ④ 사용료와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의 지불을 연체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과실에 의하여 사용료와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불 금액에 그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며,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합니다.
- ⑤ 가스사용자가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옥내 가스배관 손상으로 가스누출 시에 누출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회사에 하여야 하며, 회사는 요금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 누출여부를 확인하여 요금을 감면하여야 합니다. 누출된 월의 요금은 전년동월 사용량, 전월사용량

순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월사용 예정량 등 합리적인 사용량을 적용하여 초과된 요금을 감면합니다.

제24조(요금계산의 정정) 회사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가스계량기 검사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하여 과속 또는 저속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오차분의 요금을 전년 동월 사용량의 범위내에서 정산하며, 전년 동월 사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월평균사용량을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제25조(보증금)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예정량의 3월분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으며, 보증금 예치기간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월 사용예정량이 1,000m<sup>3</sup>/월 이상 가스사용자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다만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합니다.
3.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 년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부도, 파산,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6. 가스보일러의 시험가동 및 동파방지를 위한 임시 가스사용자

② 제1항의“월 사용예정량”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산정합니다.

1. 최근 2개년 이내 최대 월사용량
2. 설계시 반영된 월 예상 최대사용량
3.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FU551) 1.9 월사용예정량 산정기준에 따른 월 사용예정량

③ 제1항의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예치기간은 제9조에 따른 계약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2년 이내로 하되, 같은 기간중 1회 이상 연체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보증금을 예치한 가스사용자가 요금의 납부일 후 30일을 경과하고, 회사가 독촉장을 발송한 후 10일 이내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중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미납된 요금(가스계량기 교체비용 포함)을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에서 이를 충당하며, 충당후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합니다.

⑤ 회사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 중에서 제3항의 미수의 요금이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합니다.



⑥ 보증금(현금 예치시)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며, 매년 당해연도 예치기간에 의거 산정하여 익년 1월 사용요금 부과시 정산하거나 가스사용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1. 보증기간이 1년 이상 확정된 경우 :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 이율
- 2. 보증기간 미확정, 보증기간내 중도해지, 보증기간 만료 후 :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시중은행 요구불예금(보통예금) 이율

제6장 공 급

제26조(공급가스의 열량 등) ① 회사가 공급하는 열량은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천연가스 열량으로 하며 압력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열량 : 최고열량 . . . 44.37MJ/Nm<sup>3</sup>(10,600kcal/Nm<sup>3</sup>)  
 최저열량 . . . 41.02MJ/Nm<sup>3</sup>(9,800kcal/Nm<sup>3</sup>)

다만, 상기 열량범위내에서 해당 수급지점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은 한국가스공사 전체 수급지점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의 ±2% 이내이어야 합니다.

- 2. 성분 : 천연가스(메탄 85%이상)
- 3. 압력(가정용) : 최고압력 . . . . . 2,451.7Pa(250mmAq)  
 최저압력 . . . . . 980.7Pa(100mmAq)

다만, 회사가 지역특성에 따라 필요한 압력을 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4. 도시가스 품질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다만, 천연가스의 웨버지수는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공급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최고압력을 초과하는 가스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요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압력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27조와 제28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급시설 부족으로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단 또는 부족이 발생되지 않고 안정공급이 되도록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제27조(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상황 및 굴착공사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2. 가스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가스공급시설의 수리·변경·교체 등의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할 때
4.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도지사의 지시가 있을 때
5. 보안 및 안전상 부득이할 때
6. 듀얼연료설비를 사용하고 있어 연료대체계약이 체결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지를 보도기관을 통해 공고하거나 안내문을 배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사전에 홍보하여 대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공급의 제한이나 중지 시에는 가스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시간대의 조정, 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제한과 중지 또는 제28조에 따른 중지 결과 가스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8조(공급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지일 5일전에 그 사유를 통지(문자메세지, 전화, 안내문 등)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상 위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정수금(보증금, 계량기교체비 등)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미납금액이 표시된 고지서, 문자메세지, e-mail 포함)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미불금의 지불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검침·점검·작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한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4.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 변경(증설·이설·개조·철거 등)한 때
5. 가스사용자의 토지 내에 있는 회사 소유의 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 또는 망실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6. 가스사용자 등이 2개월 이상 소재가 불분명할 때
7.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교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8. 법 제26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고, 가스사용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 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9. 건물이 철거, 파손, 방치되어 가스배관이 위험상태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

10. 그 밖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회사의 정당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② 가스공급을 중지, 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중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을 중지하고자 할 때는 사용시설 부지내 입상배관, 가스계량기 전단 밸브 또는 연소기 전단밸브에서 차단 및 시건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계량기가 내부에 설치된 공동주택 등 공급중지(계량기 전단밸브 차단)가 불가능할 경우 건축물 외부배관 절단에 의한 공급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④ 제1항9호에 따른 인입배관 철거시 제4조22호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폐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29조(공급중지 등의 해제) ① 회사가 이 규정에 따라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 공급중지 사유를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회사에 공급중지 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점검하고 가스 사용상 위해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공급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 ③ 제28조제2항에 따라 사용시설을 폐지한 후 가스사용자가 다시 공급을 원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신청자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시설분담금은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제7장 안 전

제30조(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누출을 감지한 때에는 즉시 가스계량기 전후의 밸브와 퓨즈콕을 잠그고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가스사용자 등은 가스사용시설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③ 가스사용자가 고압가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및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④ 가스사용자는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 법, 민법 등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⑤ 공동주택의 정기검사 불합격 시 시설개선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재검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⑥ 가스사용자는 전출입 시 회사에 연락하여 가스연소기의 연결·철거 및 배관의 막음조치 등을 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의 임의 조치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3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도지사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적용합니다.

제8장 기 타

제32조(문서보관 및 정보공개) ① 회사는 공급비용 산정자료 등 법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국세자료 보관기관과 동일하게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정당한 사유로 민원인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정보공개(열람 등)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개인에 관한 사항 등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3조(사용장소의 출입) 회사는 점검·점검·조사 및 그 밖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 직원 및 회사의 위탁을 받은 회사의 직원을 가스사용자의 시설 설치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사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34조(가스요금의 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가스요금 경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별표 3”의 도시가스 요금표 적용은 2008.7.1일자로 소급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별표 3”의 도시가스 요금표 적용은 2009.7.1일자로 소급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별표 3”의 가스요금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①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제26조제1항제1호의 열량은 2012년 7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최고열량 : 44.4MJ/Nm<sup>3</sup>(10,600kcal/Nm<sup>3</sup>), 최저열량 : 42.28MJ/Nm<sup>3</sup>(10,100kcal/Nm<sup>3</sup>)

제2조(가스요금표의 적용)

별표 3”의 가스요금표는 도시가스 공급업체별로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①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제6조제2항에 따른 [별표2] 시설분담금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합니다.

② [별표1]의 기준열량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43.05MJ/Nm<sup>3</sup>(10,282kcal/Nm<sup>3</sup>)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가스 소비량**(단위:m<sup>3</sup>/h)

등급	2.5	4	6	10	16	25	40	65	100
모델	G1.6	G2.5	G4	G6	G10	G16	G25	G40	G65
표준소비량(m <sup>3</sup> /h)	2.5	4	6	10	16	25	40	65	100

○ 1시간당 표준사용량이 100m<sup>3</sup> 초과인 경우에는 다음의 표준가스소비량 산정 방법에 의해 산정하고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가스계량기를 산정합니다.

○ 표준소비량(m<sup>3</sup>/h) 산정을 위한 기준열량은 42.48MJ/Nm<sup>3</sup>(10,145kcal/Nm<sup>3</sup>)로 합니다.

-주택용 수요가

- 취사기구, 난방기구 및 기타 가스 소비기기의 각 사용시설의 1시간당 총 가스소비량

-주택용 외 수요가

- 보일러 등 각 사용시설의 1시간당 총 가스소비량

**[별표2] 시설분담금**

## 1. 일반 시설분담금

가. 납부대상 :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

나. 기준단가 : 24,900원/m<sup>3</sup>

다.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 기준단가(원/m<sup>3</sup>)×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m<sup>3</sup>/h)

- 100m<sup>3</sup>/h 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별표1]의 계량기 등급을 적용 합니다.

- 100등급을 초과하는 계량기는 전체 연소기의 최대사용량으로 시설분담금을 적용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 2.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가. 납부대상 : 취사전용가스사용자

나. 기준단가 : 122,290원/m<sup>3</sup>

다. 부담액 산정식 : 기준단가×{(가스공급시설내용월수-사용월수)÷(가스공급 시설 내용월수)}×가스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는 240개월을 적용합니다.

- 사용월수는 취사전용으로 용도가 변경된 가스사용자의 접속시점부터 전환시점까지의 월수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1개월에 미달하는 사용월수에 대해서는 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하고, 15일 미만은 사용월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100m<sup>3</sup>/h 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별표 1의 계량기 등급을 적용합니다.

※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7호에 의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받는 익산시 배산·장신지구의 취사전용에 한함.

###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가. 납부대상 : 공급배관 100m 당 주택난방용(단독주택) 기준 83세대 이하인 가스사용자

(가스사용 신청 시 잠재수요세대를 포함하여 산정)

- 100m당 가스사용자의 표준가스소비량 합계가 200m<sup>3</sup>/h 이하인 경우로 주택난방용 이외의 가스사용자는 주택난방용 표준 가스사용량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 산정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향후 신청하는 소비자에게 최소 3년간 동일하게 부과합니다.

나. 수요자의 부담금액 = 기준단가(원/m<sup>3</sup>)×해당지역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m<sup>3</sup>/h)

다. 기준단가(원/m<sup>3</sup>) = [(표준투자비×배관연장거리×적용률) - (시설분담금회수액 +요금상 감가상각비회수액)] ÷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총 표준가스소비량

- 표준투자비는 297,294원/m, 적용률은 60%로 적용합니다.
- 배관연장거리(m)는 신규로 가스를 공급받는 해당 지역에 가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급압력과 동등한 압력으로 운영되는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설치한 공급배관 연장거리를 적용합니다.
- 요금상 감가상각비회수액은 114,442원/세대를 적용합니다.

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적용이 난해한 산업체, 농공·공업·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특수공사 등의 시행 시는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시설분담금 외 가스공급시설 공사비를 추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4.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5.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한 기준」(전라북도 고시 제2017-145호)에 따릅니다.



## [별표3]

## ○ 전북도시가스(주) 도시가스 요금표

(단위: 원/MJ)

용 도		소비자 요금
주 택 용	기본 요금	750원/월
	취사·난방	원료비 + 공급비용
	중앙 난방	원료비 + 공급비용
일 반 용		원료비 + 공급비용
업무난방용		원료비 + 공급비용
냉난방 공조용		원료비 + 공급비용
산 업 용	동절기	원료비 + 공급비용
	하절기	원료비 + 공급비용
	기타월	원료비 + 공급비용
열병합용	동절기	원료비 + 공급비용
	하절기	원료비 + 공급비용
	기타월	원료비 + 공급비용
연료전지용		원료비 + 공급비용
수 송 용		원료비 + 공급비용
열전용설비용		원료비 + 공급비용

주) 1. 부가세 별도

2. 원료비(도매요금)는 한국가스공사 공급가격임

3. 공급비용은 도지사가 승인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요금을 적용함

4. 공급비용 단가는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 군산도시가스(주) 도시가스 요금표

(단위: 원/MJ)

용 도		소비자 요금	
주 택 용	기본 요금	750원/월	
	취사·난방	원료비 + 공급비용	
	중앙 난방	원료비 + 공급비용	
일 반 용		원료비 + 공급비용	
업무난방용		원료비 + 공급비용	
냉난방공조용		원료비 + 공급비용	
산 업 용	동 절 기	1단계	원료비 + 공급비용
		2단계	원료비 + 공급비용
		3단계	원료비 + 공급비용
	하 절 기	1단계	원료비 + 공급비용
		2단계	원료비 + 공급비용
		3단계	원료비 + 공급비용
	기 타 월	1단계	원료비 + 공급비용
		2단계	원료비 + 공급비용
		3단계	원료비 + 공급비용
열병합용	동 절 기	원료비 + 공급비용	
	하 절 기	원료비 + 공급비용	
	기 타 월	원료비 + 공급비용	
연료전지용		원료비 + 공급비용	
수 송 용		원료비 + 공급비용	
열전용설비용		원료비 + 공급비용	

주) 1. 부가세 별도

2. 원료비(도매요금)는 한국가스공사 공급가격임

3. 공급비용은 도시사가 승인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요금을 적용함

4. 공급비용 단가는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5. 산업용 구분

- 1단계 : 월 100만<sup>m</sup> 미만 사용분- 2단계 : 월 100만<sup>m</sup> 이상 ~ 500만<sup>m</sup> 미만 사용분- 3단계 : 월 500만<sup>m</sup> 이상 사용분

## ○ 전북에너지서비스(주) 도시가스 요금표

(단위: 원/MJ)

용 도			소비자 요금
주 택 용	기본 요금	일 반	750원/월
		취사전용	1,315원
	취사·난방		원료비 + 공급비용
	중앙 난방		원료비 + 공급비용
일 반 용			원료비 + 공급비용
업무난방용			원료비 + 공급비용
냉 방 용			원료비 + 공급비용
산 업 용	동 절 기	1단계	원료비 + 공급비용
		2단계	원료비 + 공급비용
		3단계	원료비 + 공급비용
	하 절 기	1단계	원료비 + 공급비용
		2단계	원료비 + 공급비용
		3단계	원료비 + 공급비용
	기 타 월	1단계	원료비 + 공급비용
		2단계	원료비 + 공급비용
		3단계	원료비 + 공급비용
열병합용	동 절 기		원료비 + 공급비용
	하 절 기		원료비 + 공급비용
	기 타 월		원료비 + 공급비용
연료전지용			원료비 + 공급비용
수 송 용			원료비 + 공급비용
열전용설비용			원료비 + 공급비용

- 주) 1. 부가세 별도  
 2. 원료비(도매요금)는 한국가스공사 공급가격임  
 3. 취사전용 기본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받는 익산시 배산·장신지구에 한함.  
 4. 공급비용은 도시사가 승인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요금을 적용함  
 5. 공급비용 단가는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6. 산업용 1단계 : 월 50만<sup>m</sup> 미만 사용분  
 산업용 2단계 : 월 50만<sup>m</sup> 이상 ~ 100만<sup>m</sup> 미만 사용분  
 산업용 3단계 : 월 100만<sup>m</sup> 이상 사용분

[별지 제1호 서식] &lt;신설 2020. 12. 1.&gt;

**도시가스 공급 신청(계약)서**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6조 제1항)

신청정보	
고객유형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사업자(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사용용도	<input type="checkbox"/> 가정용 <input type="checkbox"/> 영업용 <input type="checkbox"/> 산업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소재지	
가구수	
면적	

고객정보	
*고객명(상호)	생년월일
*주소	E-mail
*연락처	(전화) (휴대폰)

\* 부문은 고객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_\_\_\_\_ (서명, 인)

상기 본인은 도시가스 공급신청과 관련하여 모든 준수사항을 인지/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 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주) 상기 신청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명기한 표준서식으로 회사별 구성, 항목, 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상기 신청서의 항목 외 신청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계약조건 추가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lt;신설 2020. 12. 1.&gt;

**도시가스 사용 신청(계약)서**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6조 제1항)

신청정보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전입 <input type="checkbox"/> 명의변경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 )
고객유형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사업자(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사용용도	<input type="checkbox"/> 가정용 <input type="checkbox"/> 영업용 <input type="checkbox"/> 산업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설치장소번호	

고객정보	
*고객명(상호)	생년월일
*주소	E-mail
*연락처	(전화) (휴대폰)
*요금청구방법	<input type="checkbox"/> 문자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고지서

자동이체신청	
거래은행명	은행 *예금주명 (서명,인)
계좌번호	

\*부분은 고객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인)

상기 본인은 도시가스 사용신청과 관련하여 모든 준수사항을 인지/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 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주) 상기 신청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명기한 표준서식으로 회사별 구성, 항목, 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상기 신청서의 항목 외 신청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계약조건 추가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3호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변경(명칭변경)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7.

전라북도지사

1. 등록번호 : 제2002-1-전라북도-13호
2. 단 체 명 : 전북생명의전화
3.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27(중앙동3가)
4. 대 표 자 : 김 한 주
5. 주된 사업 :
  - 생명의전화 상담실 설치운영
  - 자원봉사자 개발 및 활용사업
  - 지역사회 복지사업
  - 행정기관 또는 지역사회단체가 위탁, 의뢰하는 사업 중에서 본회 설립목적에 관련 부응되는 사업
6. 변경 내용 : 단체 명칭 변경(변경전:전주생명의전화)
7. 변경일자 : 2023. 1. 18.

전라북도 공고 제2023 - 145호

## 제397회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도의회 제397회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월 27일

연번	조 례 안 명	소관부서 (담당자)
1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양현진(063-280-4142)
2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예산과 박수빈(063-280-2072)

※ 문의처 :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 1.  
 제출 자 : 전라북도지사  
 제안설명자 : 기업유치지원실장

1. 제안이유

도 조직개편(2022.10.21.)으로 규제혁신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소관 부지사로 변경하고, 공동위원장 체제로 실효성이 떨어진 부위원장 직 개편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장 변경(안 제9조제3항제1호)
  - 조직개편에 따라 이관된 소관 부지사로 변경(행정부지사 → 경제부지사)
- 나. 부위원장직 개편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부위원장직 지정(기획조정실장) 내용 삭제(안 제9조제3항)
  - 위원장 모두 사고 시 직무대행자 변경(안 제11조제2항)  
(부위원장 →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 다. 인용 상위 규정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관계부서 협의 : 기업애로해소지원단, 감사관, 인권담당관, 법무행정과, 여성가족과
-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기간 : 2023. 1. 6. ~ 1. 16.(10일간)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불임

4.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불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로 한다.

제3조 중 “규칙에”를 “규칙에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를 “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부지사

제10조제2항 중 “궐위된”을 “공석이 생긴”으로, “잔여”를 “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개정”을 “제정·개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법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적용범위)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의 지시문서(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 및 공 고 문서(고시, 공고 등)	2. 「 <u>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 제4조-- ----- -----
제3조(규제심사 청구)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실·국·본부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이하 “실·국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의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 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u>규칙</u>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라 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 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규제심사 청구) ----- ----- ----- ----- ----- <u>규칙</u> 에서 ----- -----.
제9조(설치·기능) ① (생 략)	제9조(설치·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 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2명----- -----.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u>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u>	③ ----- <u>된다.</u>
1. 행정부지사	1. <u>경제부지사</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생 략)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고 등으로 <u>궐위된</u>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u>잔여</u> 임기동안 그 직을 수행한 다.	② ----- <u>공석이 생긴</u> - ----- <u>남은</u>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④ ----- -----.

<p>1. 심사 청구된 조례·규칙 등의 <u>제·개정</u>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p> <p>2. (생략)</p> <p>⑤·⑥ (생략)</p> <p>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p> <p>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u>부위원장</u>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1. ----- <u>제정·개정</u>----- -----</p> <p>2. (현행과 같음)</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u>-----.</p>
--	---

<b>붙임 1</b>	<b>관련 법령</b>
-------------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의 주요내용은 도 조직개편('22.10.21.)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3. 작성자**

-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지방행정7급 양현진(280-4142)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 1.  
제 출 자 : 전라북도지사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1. 제안이유

최근 고물가 · 고금리 및 경기 침체 상황으로 서민층,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비영업용 소형차 및 소액 계약 등에 대한 채권 매입의무 면제가 필요하고, 전라북도의회 및 행정안전부에서도 채권의 매입기준을 완화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도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나. 지역개발채권 매입 시 기한 명시한 단서 삭제(안 제6조제1항)

- 한시면제 내용(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또는 감면 적용) 삭제

다. 기금의 융자이율을 채권 상환이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명시(안 제10조제1항 및 제5항)

- 채권 상환이율에 1퍼센트 포인트를 가산한 범위로 하되,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0.5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증감하여 산정 가능

라. 관련 근거 조례 및 규칙 현행화(안 제13조 및 제14조)

-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전라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전라북도 회계관리 규칙」

마. 비사업용 소형 자동차 및 소액 계약의 채권 매입대상 및 기준의 면제·완화(안 별표 1)

【 매입 대상 및 기준 】			
구 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b>자동차 신규등록</b>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4%	취득세 과표의 0%	면제
1,6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6%	취득세 과표의 4%	완화
2,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0%	취득세 과표의 5%	완화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	취득세 과표의 1.5%	좌동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0.6톤 이상	취득세 과표의 1.5%	취득세 과표의 0%	면제
3.5톤 초과		취득세 과표의 1.5%	
<b>자동차 이전등록</b>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2%	취득세 과표의 0%	면제
1,6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3%	좌동	
2,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5%	좌동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	취득세 과표의 0.75%	좌동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0.6톤 이상	취득세 과표의 0.75%	취득세 과표의 0%	면제
3.5톤 초과		취득세 과표의 0.75%	
<b>각종 계약체결</b>			
공사도급, 용역계약	대금청구액의 2.5% (1백만원 미만 계약 제외)	대금청구액의 2.5% (2천만원 미만 계약 제외)	완화
물품구매, 수리제조	대금청구액의 1.5% (1백만원 미만 계약 제외)	대금청구액의 1.5% (2천만원 미만 계약 제외)	완화

바. 매입면제 대상·내용에 기한 명시한 단서 삭제 및 장애인, 유공자가 차량 대체 취득 시에도 매입 면제하도록 구체적 명시(안 별표 2)

- 한시면제 내용(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또는 감면 적용) 삭제
- 대체 취득 시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말소·이전 등록할 경우 매입면제

사. 기타 띄어쓰기 및 자구 등 수정

- 이율 → 이자율, 참작하여 → 고려하여, 당해 → 해당, 기타 → 그 밖의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 의무매출채권 제도개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협조요청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4538('22.11.29)호]
    - ▶ 개정내용 : 채권 매입대상 일부 면제 및 인하 추진
    - ▶ 시행시기 : 2023. 3. 1.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미첨부 사유서 불임)
- 다. 관계부서 협의 : 기업애로해소지원단, 감사관, 인권담당관,  
법무행정과, 여성가족과
-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 마. 입법예고 : 2022. 12. 23. ~ 2023. 1. 11.(20일간)

**4.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불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전라북도 의회”를 “전라북도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을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으로,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대상자중”을 “제1항에 따른 매입대상자 중”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채권 매입대상자 중 면제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의 제목 “(채권의 상환 및 이율)”을 “(채권의 상환 및 이자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이율”을 “이자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환연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를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도보 또는 그 밖의”로, “전일”을 “전날”로, “이율”을 “이자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래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하며”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않으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전일”을 “전날”로 한다.

제9조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각호”를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상환 기일전이라도”를 “상환기일 전이라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원회는 제1항”으로, “이율을 0.5퍼센트 내지 1퍼센트”를 “이자율을 0.5퍼센트 포인트 범위”로 한다.

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채권의 상환이자율에 1퍼센트 포인트를 가산한 범위에서 제17조에 따른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1. 삭제



2. 삭제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도지사는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를 “도지사는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1항”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운용하지 아니하고”를 “통합기금으로 관리·운용하지 않고”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라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전라북도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2. 제9조에 따른 용자금

제15조제1항 중 “당해연도 회계개시전”을 “해당 연도 회계개시 전”으로, “전라북도 의회”를 “전라북도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회계 연도”를 “해당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으로, “통합기금운용위원회”를 “전라북도통합기금운용 위원회”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4조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의 매입과 면제대상 및 용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lt;개정 2011. 2. 7, 2016. 12. 30, 2018. 3. 30&gt;

## 매입대상 및 기준(제6조제1항 관련)

대상별	매입대상	매입기준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 이상 ② 2,000cc 이상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다. 비사업용화물또는특수자동차(1,000cc 이상) ① 3.5톤 초과	취득세과표의 4/100 취득세과표의 5/100  취득세과표의 1.5/100  취득세과표의 1.5/100
2. 자동차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 이상 ② 2,000cc 이상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다. 비사업용화물또는특수자동차(1,000cc 이상) ① 3.5톤 초과	취득세과표의 3/100 취득세과표의 5/100  취득세과표의 0.75/100  취득세과표의 0.75/100
3. 각종 계약체결 (자치단체 전액 출자 법인의 계약체결 포함)	가. 공사도급, 용역계약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나. 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100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100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버림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2] &lt;개정 2009. 12. 28, 2011. 11. 11&gt;

## 매 입 면 제(제6조제4항 관련)

구 분	매 입 면 제 대 상 및 내 용
1. 매입의무 면제기관	<p>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p> <p>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p> <p>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정부기관</p> <p>라.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p> <p>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 시설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나환자 치료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p> <p>바. 민·상법외의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다만, 그 대행 또는 수탁업무에 관한 채권매입 의무만을 면제한다)</p> <p>사. 「정당법」에 의한 정당</p> <p>아.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p>
2. 매입의무 면제대상	<p>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하는 이전등록</p> <p>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1대의 차량 등록(1인 1대에 한함. 단, 다른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채권 매입 면제를 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p> <p>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p> <p>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p> <p>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p> <p>다. 주민 직영사업 및 임금 직영사업</p>

구 분	매 입 면 제 대 상 및 내 용
	<p>라. 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p> <p>마.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p> <p>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차량 및 건설기계의 대체 취득(교환취득 포함)시의 등록.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 매입(「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제92조를 준용함)</p> <p>사. 법인 합병시의 자동차·건설기계 이전등록</p> <p>아.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수탁·대행하는 용역계약</p> <p>자.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 채권 매입을 면제 또는 감면한다. (감면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을 준용함)</p> <p>1) 채권매입 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p> <p>2) 채권매입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매입 금액에서 150만원을 감면</p> <p>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자동차 (감면대상과 감면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를 준용함)</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u></p>	<p><u>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u></p>
<p>제2조(기금의 설치) ① (생 략)</p> <p>②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을 적용한다.</p> <p>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 성한다.</p> <p>1. 삭 제</p> <p>2. ~ 7. (생 략)</p> <p>제5조(채권 발행) ①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u>전라북도 의회</u>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6조(채권의 매입) ①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별표1</u>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다 만,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u>별표 1 제1호(같은 호 가목③)의 등록은 제외한다</u> 및 제2호의 등록에 대 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같은 표 제1호 가목 ③의 등록에 대해서는 매입기준을 50% 감면한다.</p> <p>1.·2. (생 략)</p> <p>②·③ (생 략)</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매입대상자중 면제대 상자는 <u>별표2와 같다</u>.</p> <p>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대상자중 도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p> <p>제7조(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후 일시 상환하며 그 이율 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를 적용한</p>	<p>제2조(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을 적용한다.</p> <p>제4조(기금의 재원) ----- 각 호 ----- ----.</p> <p>2. ~ 7. (현행과 같음)</p> <p>제5조(채권 발행) ① ----- ----- <u>전라북도의회</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른 ----- -----.</p> <p>제6조(채권의 매입) ①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 항 ----- - <u>별표 1</u> ----- &lt;단서 삭제&gt;</p> <p>1.·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에 따른 채권 매입대상자 중 면제대상자는 <u>별표 2와 같다</u>.</p> <p>⑤ 제1항에 따른 매입대상자 중 ----- -----.</p> <p>제7조(채권의 상환 및 이자율) ① 제6조에 따른 ----- ----- 이자 율 -----</p>

다. 다만, 시중금리 및 채권 유통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가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 개시일부터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

③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④채권의 상환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⑤ (생략)

제9조(기금의 용자대상) 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각호와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에 용자하되, 지역발전·복리증진·사업의 수익 및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용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용한다.

제10조(용자조건) ①용자금의 이율은 연리 1.75퍼센트 하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1. 삭제

2. 삭제

②용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 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은 투자비 회수 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용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  
-----  
-----  
-----

② -----  
---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도보 또는 그 밖의 -----  
----- 일간 -----  
-----  
이자율-----  
-----

③ -----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않으며 -----  
-----

④ -----  
----- 일간 -----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의 용자대상)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각 호-----  
-----  
-----

제10조(용자조건) ① 용자금의 이자율은 채권의 상환 이자율에 1퍼센트 포인트를 가산한 범위에서 제17조에 따른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1. 삭제

2. 삭제

② -----  
-----  
-----  
그 밖의 -----  
-----

④ 제2항에 따라 -----  
-----

상환 기일전이라도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중 금리 변동에 따라 신규 용자금의 이율을 0.5퍼센트 내지 1퍼센트에서 탄력적으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용자약정 및 용자절차)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용자약정서에 의한다.

③ 용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용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용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용자대상기관은 용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기금자금의 관리) ① ~ ③ (생략)

④ 도지사는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운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운용·관리한다.

제14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

-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원리금
-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
- 3.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③ 삭제

④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상환기일 전이라도 -----  
-----.

⑤ 위원회는 제1항-----  
----- 이자율을 0.5퍼센트 포인  
트 범위-----  
-----.

제11조(용자약정 및 용자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③ ----- 고려하여 -  
-----.

제12조(용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  
-----  
----- 해당 -----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기금자금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전라북도 통합제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 통합기금으로 관리·운용하지 않고 --  
-----.

제14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 제4조  
에 따른 -----.

② ----- 각 호-----.

- 1. 제7조에 따른 -----
- 2. 제9조에 따른 용자금
- 3. 그 밖에 -----

④ ----- 「전라북도 회  
계관리 규칙」-----.

제15조(기금운용계획) ①도지사는 당해연도 회계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북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생략)
- 2. 당해회계년도 용자계획
- 3. (생략)
-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통합기금 운용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2. (생략)

제24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① ----- 해당 연도 회계개시 전----- 전라북도의회-----  
-----.

② 제1항에 따른 ----- 각 호-----.

- 1. (현행과 같음)
- 2. 해당 회계연도 -----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

제17조(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 전라북도통합기금운용위원회-----.

제19조(위원회의 기능) ----- 각 호-----  
-----.

- 1. 2. (현행과 같음)

제24조(수당 및 여비) ----- 관계기관-----  
-----  
-----  
-----  
-----.



**붙임 1**    **관련 법령 및 행안부 협조요청 공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6조(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 ①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는 지정금융회사(이하 “지정 금융회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 하되,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1의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1의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1의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3.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7조(기금의 운용기준)** ③제1항의 기금은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효과가 큰 다음 각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용자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상·하수도, 도로·주택건설 및 유통단지건설등 공공투자사업
- 2. 사업의 수행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경영수익사업
- 3.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등을 위한 사업
- 4.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 5. 기타 정부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등

□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통합기금운용위원회 설치)**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통합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통합기금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통합계정의 용자대상사업의 선정, 예탁금과 용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 4. 통합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회의에 부치는 사항

□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요청 공문



행정안전부

#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무매출채권 제도개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3693(2022.10.07.)호 등과 관련됩니다.
2. 행정안전부는 그간 전국 자치단체와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 인상 및 채권 매입의무 일부 면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이에, 자치단체별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 드리오니, 각 자치단체에서는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입법예고 단축** 등을 통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개정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표면금리 인상

- 1) 개정내용 : 채권 표면금리를 **2.5%로 인상**
- 2) 시행시기 : '23. 1. 1.

### 나. 채권 매입대상 일부 면제

- 1) 개정내용
  - 가) **1,000~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신규·이전 등록 시** 채권 매입 면제
  - 나)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채권 매입 면제
- 2) 시행시기 : '23. 3. 1.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재정담당관), 도시철도과장, 부산광역시(예산담당관), 도시철도과장, 대구광역시(예산담당관), 철도시설과장, 인천광역시(재정관리담당관), 광주광역시(예산담당관), 대전광역시(예산담당관), 울산광역시(예산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예산담당관), 경기도지사(예산담당관), 강원도지사(예산과장), 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 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 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 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창원시장(예산담당관)

주무관	<b>전지양</b>	행정사무관	<b>허정</b>	재정정책과장	전결 2022. 11. 29. <b>홍성철</b>
협조자					
시행	재정정책과-4538	(2022. 11. 29.)	접수	예산과-11480	(2022. 11. 29.)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603호 / <a href="http://www.mois.go.kr">http://www.mois.go.kr</a>			
전화번호	044-205-3717	팩스번호	044-204-8964	/ <a href="mailto:jjyang1@mail.go.kr">jjyang1@mail.go.kr</a>	/ 비공개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2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사유**

- 금번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을 완화하여 도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3. 작성자**

- 예산과 지방행정서기 박수빈

전라북도 공고 제2023-146호

###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월 27일

■ 공 고 사 항

- 1. 등록번호 : 제2023-01호
  - 2. 모 집 자 : 남원문화원(대표 김주완)
  - 3. 모집목적 : 남원광한루 춘향사에 봉안할 새로운 춘향영정을 제작하여 열녀  
춘향의 정신을 기르고자 함
  - 4. 모 집 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5. 모집금품 : 현금
  - 6. 모집기간 : 2023. 1. 27. ~ 2023. 5. 20.
  - 7. 사용기간 : 2023. 1. 27. ~ 2023. 6. 1.
  - 8. 모집지역 : 전국
  - 9. 모집방법 : 온라인 모금, 후원 모금 등
- \* 사무실 소재지 : 남원시 광한북로 57

전라북도 공고 제2023-149호




###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전라북도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월 27일

□ 공인의 등록

- 1. 공인 등록·폐기 사유 :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 2. 공인 등록·폐기일 : 2023년 1월 20일
- 3. 등록·폐기 공인명 및 인영

등록 공인		
공인명	인영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	전라북도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분임물품출납원인	
"	전라북도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분임정수관인	
"	전라북도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 공고 제2023-153호

## 전라북도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제397회 임시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월 27일

구 분	제출 안건명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조례안 (2건)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예산과 박수빈 주무관 280-2072)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양현진 주무관 280-4142)
동의안 (1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배병훈 주무관 280-2947)

전라북도 공고 제2023-163호

##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업자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전라북도지사

1.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2023. 1. 27. ~ 2023. 2. 15.)
2. 공고방법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공고
3. 공시송달 내용

상호	대표자	주소지	처분의 원인	예정된 처분	비고
주식회사 조영라이팅	신대상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죽향로 34, 2동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 4. 고 지

-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사항: 전라북도 에너지수소산업과(063-280-3235). 끝.



## 도지사 지시사항

◇ 2023. 1. 20.(금) 09:30 간부회의 시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3-1	전북특별자치도 전 실국 산하기관 참여 총력 추진	<p style="text-align: center;"><b>〈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현황 〉</b></p> <p style="text-align: center;">법 공포('23.1.17.) → <b>특례 발굴</b>('23.1.~) → 특례초안 작성('23.3.) → 지원위 구성('23.3.) → 부처 협의('23.4.) → 위촉 및 1차 회의('23.4.18.)</p> <p>○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로운 100년과 천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사항인 반면 준비시간이 1년도 남지 않았으며, 우선적으로 3월까지 전북만의 차별화된 특례 발굴을 위해 전 실·국 및 전북연구원, 산하기관 전체가 참여하여 도정 역량을 결집하기 바람.</p> <p>- 실·국장은 특례 발굴 간사(7개 분과별 해당 실국 주무팀장)가 소명의식을 갖고 특례 발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출연·유관기관과 소통하여 아이디어를 얻는 한편 팀장별 1~2건씩 특례 발굴을 추진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특별자치도추진단 / 협조 : 전 실·국)</p>
2023-2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리 철저	<p style="text-align: center;"><b>〈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1.20. 중대본 발표) 〉</b></p> <p>○ <b>(현황)</b>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3개지표 참고치 달성) 고려, 1단계 착용 의무 조정 가능 상황</p> <p>○ <b>(조정) 마스크 착용 권고</b>로 전환</p> <p>○ <b>(시행)</b> '23.1.30.(월)부터(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 등 감안) * 1단계 조정 시 착용 의무 장소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p> <p>○ '23.1.30.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으나 인구가동이 많은 설 연휴에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 방역에 대한 경계심이 과도하게 누그러지지 않도록 홍보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가 최소화될 수 있게 온·오프라인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감염병관리과 / 협조 : 사회재난과)</p>
2023-3	업무협약 체결 후속조치 철저	<p style="text-align: center;"><b>〈 업무협약 체결 〉</b></p> <p style="text-align: center;">- 취임 후 협약 34건 체결(투자협약 제외)</p> <p>○ 협약 체결 이후 협약내용의 실천과 지속이 중요하므로 실제 성과가 나고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국별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추진상황을 보고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자치행정과 / 협조 : 전 실·국)</p>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3-4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예방 대응 철저	<p style="text-align: center;"><b>〈 민간단체 지급 정부 보조금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22년까지 31.4조(부정수급 153건 34억 환수)</li> <li>- <b>(행안부)</b> 재정부담 완화, 투명성·책임성 확보 위해 지자체별 자체 조사 추진</li> </ul> <p>○ 2월말까지 지자체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자체점검이행되고 자체 검사에 따라 행안부 추가 점검도 있을 예정이므로 예방적 점검 및 사전 안내·지도 등 대응을 철저히 하기 바람, -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집행 등에 대해 신고·접수 받을 수 있도록 누리집에 게시·홍보하여 부정수급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예산과 / 협조 : 전 실·국)</p>
	당면·현안업무	<p>○ <b>2023년 도의회와 소통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도가 협치하고 있다는 노력을 의회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하기 바람,</li> <li>- '23.2월 회기 전에 의회 의정발언(도정질문, 5분발언, 긴급 현안질문, 건의 결의안 등) 및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등에 대해 해당 의원님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등 사전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대외협력과 / 협조 : 전 실·국)</p>
	당면·현안업무	<p style="text-align: center;"><b>〈2023년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명절기간)</b> 1. 21. ~ 1. 24.</li> <li>○ <b>(분야/대책)</b> 4개 분야* 47개 대책 * 지역경제 안정, 민생회복, 생활편의, 안전대응</li> <li>○ <b>(종합상황실 운영)</b> 7개반 14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상황반 : 자치행정과           - 물가대책상황반 : 일자리민생경제과</li> <li>- 재난재해대책반 : 자연재난과   - 생활환경개선반 : 기후환경정책과</li> <li>-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 소방상황반 : 소방본부</li> <li>- 의료·방역대책상황반 : <b>(의료)</b> 보건의료과, <b>(방역)</b> 감염병관리과</li> </ul> </li> </ul> <p>○ '23년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 차질없이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민과 귀성객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 민생안정 종합대책(1.12.) 발표에 따라 분야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자치행정과 / 협조 : 전 실·국)</p>

군산시 고시 제2023-11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갯벌연구센터 및 대로 1-4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내흥동 90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갯벌연구센터 및 대로 1-4호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23년 1월 27일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내흥동 903번지 외 14필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도로) 사업
  - 나. 명 칭 : 갯벌연구센터 신축공사
-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가. 갯벌연구센터 : 대지면적 A=11,161.79㎡, 건축면적 1,703.59㎡
  - 나. 대로 1-4호선 : A=318㎡ (가감속차로 설치)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산단남북로 177-1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갯벌연구센터장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 6. 관계도서 : 게재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일련번호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금회시행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42,344.0	22,194.0	11,161.79	-	-	-	-	-	
1	군산시 내홍동	894	12	하천	44.0	3.0	3.0	농림수산부	-	-	-	-	진입도로
2	군산시 내홍동	894	8	하천	5,785.0	91.0	91.0	농림수산부	-	-	-	-	진입도로
3	군산시 내홍동	903	-	잡종지	36,515.0	22,100.0	11,067.79	해양수산부	-	-	-	-	

■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련번호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금회시행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7,147.0	318.0	318.0	-	-	-	-	-	
1	군산시 내홍동	894	13	하천	128.0	39.0	39.0	농림수산부	-	-	-	-	
2	군산시 내홍동	894	12	하천	44.0	38.0	38.0	농림수산부	-	-	-	-	
3	군산시 내홍동	894	8	하천	5,785.0	96.0	96.0	농림수산부	-	-	-	-	
4	군산시 내홍동	336	-	전	225.0	38.0	38.0	군산시	-	-	-	-	
5	군산시 내홍동	338	1	임	648.0	3.0	3.0	군산시	-	-	-	-	
6	군산시 내홍동	332	52	대	35.0	32.0	32.0	군산시	-	-	-	-	
7	군산시 내홍동	332	40	도	2.0	2.0	2.0	국토교통부	-	-	-	-	
8	군산시 내홍동	332	68	도	3.0	3.0	3.0	이점영외6인	-	이*영	대전시 중구 관저동	21분의 6	
										박*례	군산시 내홍동	21분의 2	
										이*덕	김제군 봉남면 월성리	21분의 1	
										이**마	김제군 공덕면 회룡리	21분의 2	
										이*례	군산시 구암동	21분의 2	
										이*부	군산시 내홍동	21분의 4	
										이*호	군산시 내홍동	21분의 4	
9	군산시 내홍동	332	41	대	9.0	9.0	9.0	군산시	-	-	-	-	
10	군산시 내홍동	894	35	하천	25.0	25.0	25.0	농림수산부	-	-	-	-	
11	군산시 내홍동	894	11	하천	61.0	32.0	32.0	농림수산부	-	-	-	-	
12	군산시 내홍동	338	7	전	182.0	1.0	1.0	군산시	-	-	-	-	

익산시 고시 제2023-10호

## 익산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3년 1월 27일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익산시 신동 128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교)(원광대학교)사업
- 사업의 명칭 : 원광대학교 병원 제2진입로 개선공사

### 3. 면적 또는 규모

- 원광대학교 병원 제2진입로 개선공사 : 1,984㎡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학교법인 원광학원
- 주 소 : 익산시 익산대로 460(신동)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4.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 “계재 생략”

정읍시 고시 제2023-14호

## 정읍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정주변전소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월 27일

정 읍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정읍시 하북동 723-9번지 외 20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 정주변전소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규모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면적 : 1,540㎡

나. 사업규모 : 도로개설 L=155m, B=9.0~10.0m

- 도로개설(소로1-91) : L=104m, B=10.0m

- 도로개설(소로2-429) : L=51m, B=9.0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1

나.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 초) 2017. 04. 07. ~ 2021. 12. 30.

└ (변 경) 2017. 04. 07. ~ 2023. 06.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자 조서 : “따로 붙임”

7. 관계도서(도면) : 게재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자 조서(변경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동	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정읍	하북	723-9	전	50	50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2	정읍	하북	725-6	전	46	46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3	정읍	하북	721-23	전	226	226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4	정읍	하북	727-9	전	92	92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5	정읍	하북	719-15	전	25	25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6	정읍	하북	719-16	전	18	18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7	정읍	하북	719-17	전	5	5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8	정읍	하북	719-18	전	6	6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9	정읍	하북	719-19	전	128	128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10	정읍	하북	719-20	전	5	5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11	정읍	하북	719-22	전	118	118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12	정읍	하북	719-24	전	233	233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13	정읍	하북	727-8	전	7	7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14	정읍	하북	720-8	전	141	141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15	정읍	하북	720-9	전	5	5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16	정읍	하북	720-7	전	57	57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17	정읍	하북	720-6	전	58	58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18	정읍	하북	720-5	전	100	100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19	정읍	하북	722-2	대	203	203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20	정읍	하북	산106-5	임	10	10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21	정읍	수성	743-31	도	7	7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b>총계</b>			21필지		1,540	1,540						

김제시 고시 제2023-8호

##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외에밋들 징계장터 조성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외에밋들 징계장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3년 1월 27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제시 교동 12-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김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공공지)
  - 나. 명 칭 : 외에밋들 징계장터 조성사업
3. 사업면적 및 규모
  - 가. 면 적 : 1,543㎡
  - 나. 규 모 : 목재테크 78㎡, 잔디광장 600㎡, 황토포장 295㎡, 전석쌓기 14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김제시장(도시재생과)
  - 나. 주 소 : 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5. 사업시행기간
  - 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 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
7. 관계도서(도면) : 게재생략. 끝.



## [ 붙임 ]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 김제시 교동)

연번	지 번	지 목	지 적 (m <sup>2</sup>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 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계	총17필지		3,504.0	1,543.0					
1	21-1	대	21.0	3.0	김제시				
2	17-3	대	306.0	289.0	김제시				
3	24-2	대	281.0	75.0	김제시				
4	24-4	대	870.0	36.0	김제시				
5	24-14	대	3.0	3.0	김제시				
6	24-13	대	3.0	3.0	김제시				
7	24-11	대	43.0	43.0	김제시				
8	24-9	대	102.0	102.0	김제시				
9	15-5	대	40.0	40.0	김제시				
10	24-1	대	86.0	83.0	김제시				
11	12-9	대	192.0	151.0	김제시				
12	12-8	대	251.0	251.0	김제시				
13	12-3	대	347.0	195.0	김제시				
14	13-2	전	423.0	8.0	김제시				
15	12-10	대	73.0	73.0	김제시				34분의 30
					김진영	김제시 교동 12-3			34분의 4
16	11-1	대	119.0	41.0	김제시				
17	11-2	대	344.0	147.0	김제시				34분의 30
					김진영	김제시 교동 12-3			34분의 4

김제시 고시 제2023-9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면 및 서류는 김제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김 제 시 장  
2023년 1월 27일

1. 사 업 명 : 김제시 금구면 국제미소래(1단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성 명 : 케이엔시티 주식회사 (대표자 김대식)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277, 3층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358-37 외 7필지

나. 대지면적 : 5,242㎡

다. 건축면적 : 1,353.5175㎡

라. 연 면 적 : 31,020.0933㎡

마. 규 모 : 198세대 (주2개동/지하2층,최고27층)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사. 공급방식 : 공동주택(아파트) / 민간임대

아. 사업기간 : 2023. 5. ~ 2026. 6.

4.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

5.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에 따라 협의한 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김제시청 건축과 건축관리팀 오영채(☎540-33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고시 제2023-10호

##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국립농업과학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

「건축법」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국립농업과학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시는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완 주 군 수  
2023년 1월 27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78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국립농업과학원)사업
  - 명 칭 :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온실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연구시설 : A=839,329.1㎡(전체면적 중 **A블럭 분할시행**)  
(분할면적 : **A블럭: 554,238㎡**, B블럭: 200,443.7㎡, C블럭: 84,647.4㎡)

구분	건축면적(㎡)			바닥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1,967.31	910.16	42,877.47	85,455.86	953.87	86,409.73		
A블럭	소계	<b>40,090.65</b>	<b>910.16</b>	<b>41,000.81</b>	<b>82,876.80</b>	<b>953.87</b>	<b>83,830.67</b>	
	주1, 부1~56	38,957.08	-	38,957.08	80,667.85	-	80,667.85	
	부57	334.70	-	334.70	332.73	-	332.73	
	부58	782.95	-	782.95	1,860.30	-	1,860.30	
	부59	8.64	-	8.64	8.64	-	8.64	기인가
	부60	7.28	-	7.28	7.28	-	7.28	
	부61	-	<b>351.56</b>	<b>351.56</b>	-	<b>395.27</b>	<b>395.27</b>	금회
	부62	-	<b>558.6</b>	<b>558.6</b>	-	<b>558.6</b>	<b>558.6</b>	
B블럭	소계	1,735.60	-	1,735.60	2,438.00	-	2,438.00	
	주1, 부1~6	1,735.60	-	1,735.60	2,438.00	-	2,438.00	
C블럭	소계	141.06	-	141.06	141.06	-	141.06	
	주1	141.06	-	141.06	141.06	-	141.0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장)
-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건축허가일
- 준공예정일 : 2024. 02. 2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조서 : 게재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임실군 공고 제2023-72호

## 임실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임실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 계획인가(변경) 전 서류의 열람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임실군청 관광치즈과(☎063-640-260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임 실 군 수  
2023년 1월 27일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가.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 88-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나. 사업의 명칭 : 필봉 풍물민속마을 조성사업

### 3. 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

시 설 명	위 치	사업규모	비고
문화시설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 88-1번지 일원(필봉문화촌)	부지면적 : 기완료 51,175㎡, <b>금회 43,080㎡</b> 건축연면적 : 금회 550㎡(9동)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임실군수

나. 주 소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나. 준공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 6. 열람기간 : 도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 8. 관계도서 : “계재 생략”

### 9. 의견서 제출 : 일반 및 이해관계인은 관련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 강진면 필봉리)

일련 번호	소재지		지적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토지소유자		권리자			비고
	지번	지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1	37-1	대	13,649	13,649	13,649	13,649	임실군	-	-	-	-	
2	37-2	대	1,480	1,480	1,480	1,480	임실군	-	-	-	-	
3	37-3	대	6,241	6,241	6,241	6,241	임실군	-	-	-	-	
4	38	임	486	486	486	486	양진성	임실군 강진면 필봉곶길 70	-	-	-	
5	88-1	대	24,338	24,338	24,338	24,338	임실군	-	-	-	-	
6	88-44	대	764	764	512	512	임실군	-	-	-	-	
7	88-45	대	116	116	116	116	임실군	-	-	-	-	
8	88-131	대	352	352	352	352	임실군	-	-	-	-	
9	88-134	대	235	235	235	235	임실군	-	-	-	-	
10	88-135	대	585	585	550	550	임실군	-	-	-	-	
11	88-142	대	1,620	1,620	1,620	1,620	임실군	-	-	-	-	
12	88-148	대	117	117	117	117	임실군	-	-	-	-	
13	88-149	대	74	74	74	74	임실군	-	-	-	-	
14	337	전	975	975	975	975	박노성 이성순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322-1 임실군 강진면 필봉곶길 57-20	-	-	-	
15	37-4	도	763	763	430	763	임실군	-	-	-	-	
16	37	임	-	602	-	602	박경삼	-	-	-	-	
17	37-5	대	-	23,324	-	23,324	임실군	-	-	-	-	
18	37-6	대	-	1,748	-	1,748	임실군	-	-	-	-	
19	37-7	대	-	9,376	-	9,376	임실군	-	-	-	-	
20	88-8	전	-	142	-	142	임실군	-	-	-	-	
21	88-147	대	-	7,555	-	7,555	임실군	-	-	-	-	
합	계		51,795	94,542	51,175	94,255						

○ 수용되거나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토 지 소 채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단위	소유자		비고 (이해관계인)
	군	읍면 리	지번 (원래지번)	성명					주소		
계											
-											“해당없음”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3-2호

##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안내 공고

소방기본법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를 위반하여, 동법 제56조(과태료)제1항1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였으나 독촉 후에도 납부되지 않아 재산을 압류하였고, 재산 압류 인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7.

익 산 소 방 서 장

1. 공고기간: 2023. 1. 27. ~ 2023. 2. 13.
2. 공 고 명: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안내
3. 공고내용: 귀하께서는 소방관련법을 위반하여 부과 받은 과태료를 독촉 납부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채권자	성 명	익산소방서	사업자등록번호	403-83-01119	
	주 소	전북 익산시 무왕로 1338			
채무자	성 명	김*훈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65번길 13-11, B3호			
압류채권의 표시					
○ 자동차 1대 : 95누4320					
압류일		2023년 1월 11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단위: 원)		
			계	지방세	가산금
과태료	2022	22.2.7.	1,162,000	1,000,000	162,000
체납처분비			없음		
합계			1,162,000		

3. 알림사항: 압류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납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납부 확인 시 압류등기를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미납 시 증가산금 부과-최장 60개월)
4. 납부방법: 전북은행 1013-01-3573963 익산소방서(납부자명으로 입금)  
⇒ 입금 후 담당자(063-839-3244)에게 통보 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급 후 시중은행에 납부가능
5. 이 공고에 대한 문의사항은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 담당자(063-839-3244)로 연락바랍니다.